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근거 마련 등〉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26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 안 경 위	1
II. 제 안 이 유	1
III. 주 요 내 용	2
IV. 검 토 의 견	3
1. 총 괄	3
2.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용어 정의	11
3.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의 근거 마련	22
4.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에 “사업화” 개념 추가 등	27
5. 유동화보증의 세부 운영사항 규정	33
6. 수수료 및 보증료 수취 근거 마련	42
V. 참 고 자 료	4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관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30.
3. 회부연월일 : 2025. 10. 31.

II.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위험분담 수단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공률은 높은 수준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기업 성장과 국가경제 기여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어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반 확충에 기여할 다양한 주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및 관련 자금의 이자 지원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사업화보증, 기술자산등, 회사채등, 유동화, 유동화보증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6호부터 12호까지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개정).

라. 기술보증기금이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유동화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산등 양도·위탁자는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마.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원 업무 수행 시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IV. 검토의견

1. 총괄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
술보증기금”이라 함)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며, 해당 사업의 수행을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
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
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42억원 수준이고, 동 계정을 통해 기술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기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음.

[표 1] 중소기업기술혁신 계정 수입·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수입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출연금)	3,146.0	3,146.0
	○이자수입	54.6	42.9
	○회수금수입	403.7	517.7
	○여유자금회수	378.9	476.0
수입합계		3,983.2	4,182.6
지출	○사업비	3,001.3	3,192.5
	○사업운영비	510.6	545.9
	○여유자금운용	471.3	444.2
지출합계		3,983.2	4,182.6

주: 2025.12.31.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표 2] 중소기업기술혁신 계정 주요 사업 현황('25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¹⁾
기술수요정보 발굴 및 활용촉진사업	중소기업 수요발굴 전담조직 “기술거래 서포터즈” 운영	20
	글로벌 기술이전을 위한 해외 기술수요 발굴 및 국내기업 매칭 지원	120
공급기술 DB 고도화	기술보유기관 공급기술의 기술설명자료(SMK) 제작 및 중개 지원	70
혁신중개 서비스 활용 촉진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술이전(신탁, 파산기술) 중개수수료 지원	28
	민간기술거래기관 육성 및 민관 공동중개 활성화 지원	60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운영	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스마트 테크브릿지’) 운영	450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용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	20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기술이전 중소기업의 기업·기술진단 및 전략 컨설팅 지원	120
	기술이전 중소기업의 상용화 비용(시제품제작, 인증 등) 지원	1,600
	지식재산(IP) 인수보증 활용기업의 금융비용 지원	210

주: 1) 일반사업출연금(350-02) 집계 ('25년도 예산 3,146백만원 = 사업출연금 2,698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 448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지출 및 운용과 회계·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R&D 성과의 실질적인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현행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알선, 정보수집 분석 등 비금융사업에 한정된 사업범위를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를 통해 사업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보증 등 금융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고(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5 신설),

이를 위해 기술혁신사업화보증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며(안 제2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해당 사업의 실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보증기금에 설치하는 계정의 명칭을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에서 “기술혁신사업화계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표 3]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사업범위	비금융사업 -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기술평가 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제공 - 기타 연구개발 지원 등	금융사업 추가 - 기술혁신사업화보증 - 유동화보증 - 이차지원 등
계정명칭 (기술보증기금에 설치)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	기술혁신사업화계정
사업수행 및 계정관리 위탁	기술보증기금에 위탁 가능	기술보증기금에 위탁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예산에 “R&D 사업화계정 출연” 사업을 5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여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 보증의 승수효과 등을 통해 약 3,400억원 규모의 사업화보증을 제공할 계획인바, 개정안은 동 예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표 4] 2026년 관련 예산편성 내역

(단위: 억 원)

구분	R&D 사업화계정 출연				
	금융지원			비금융지원	합계
	간접금융 (보증→ 은행대출)	직접금융 (자본시장 조달지원)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²⁾	
	프로젝트 방식 R&D보증	R&D기술 유동화보증	IP유동화 보증		
편성예산	306.1	108.8	69.2	15.9	500
지원규모(안) ¹⁾	2,600	500	300	15.9	3,415.9

주: 1) 보증의 승수효과를 통해 소규모 예산으로 대규모 금액을 지원

2) 기존 기술거래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 고도화 등 관련 비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표 5] 2026년 신규 예산반영 보증사업별 개요

① 프로젝트 방식 R&D 보증

(개요) 기존의 기업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R&D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기존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사업화 보증을 지원

(지원대상) 정부 R&D 성공과제 사업화 추진기업 또는 공공연(출연연, 대학 등)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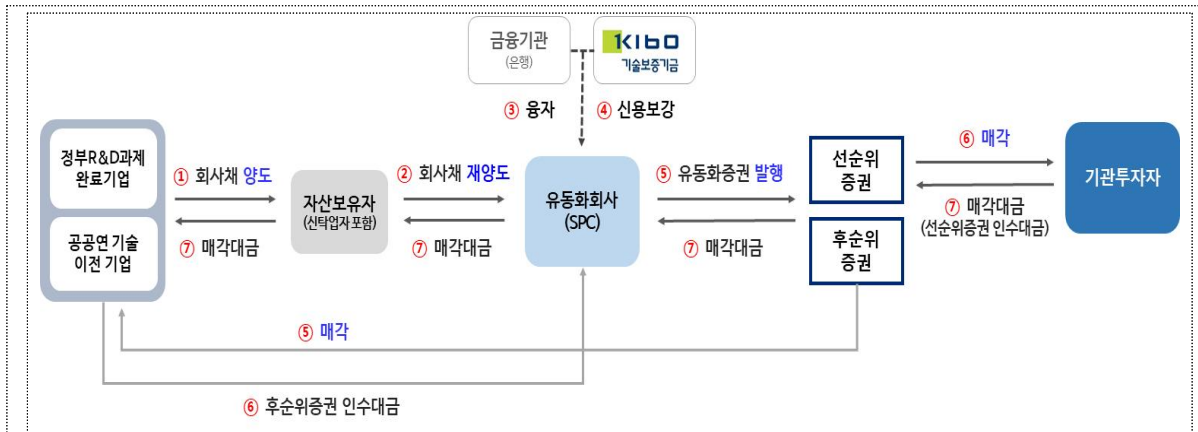
(보증)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산정하여 과제당 최대 30억원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100억원(해지 후 잔액이 30억원 이내일 경우)까지 지원

② R&D기술 유동화보증

(기초자산) 기술이전 및 R&D성공과제 기술 사업화기업의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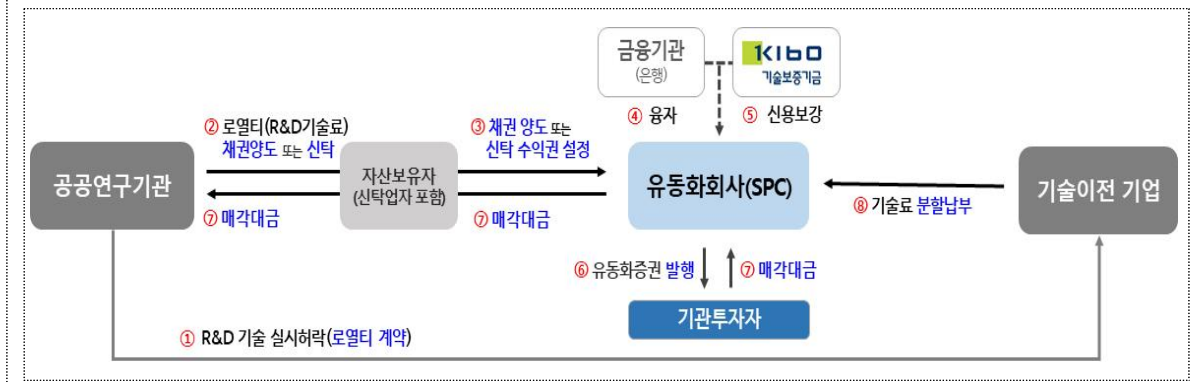
(지원방식) 유동화회사(SPC)를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

(지원한도) 기술의 매출발생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기반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산출된 기술사업화가치 금액 이내에서 지원



③ IP 유동화보증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수취할 로열티채권(기술료)을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매각대금으로 일시에 수취
(기술도입기업) 기술이전계약 체결시 일시에 납부할 정액기술료 또는 선급금을 유동화 대상 기간에 걸쳐 분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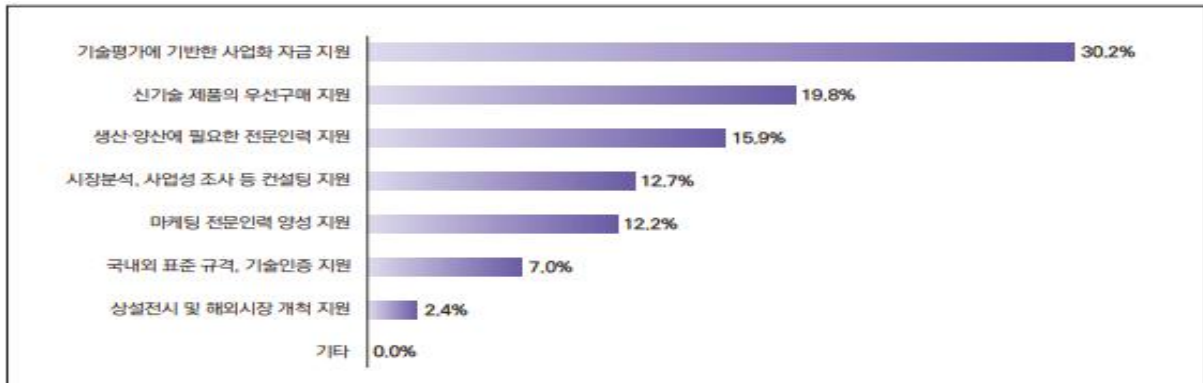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51.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개발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기술평가에 기반한 사업화 금융지원”이 1순위(30.2%)를 차지한 점을 고려²⁾할 때 개정안의 보증사업 등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R&D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202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2024.12.)

[표 6]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



자료: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74p)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의 안정적·효과적 운영을 위해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전문성을 갖춘 기술보증기금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계정의 확대 설치 및 계정의 출연·결산·손실보전 근거 마련 필요성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임.

한편,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계정(이하 “기술보증기금 본계정”이라 함)을 통해서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술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 등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표 7] 기술보증기금 본계정의 기술보증 및 유동화보증 신규보증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3년 신규공급	‘24년 신규공급	지원대상	평가모형
본 계 정	기술보증	60,957	55,156	-	KTRS 표준모형
	기술창업보증	29,875	27,726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수출기업보증	8,175	7,598	수출·벤처·이노비즈 해당기업	
	벤처기업	24,184	19,468		
	이노비즈기업	17,160	13,101		
	유동화회사보증	1,991	4,157	-	KTRS 표준모형
	일반 유동화회사보증	1,991	3,462	중소·중견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녹색자산유동화보증	-	695	녹색경제활동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본계정과 개정안의 기술혁신사업화계정에 따른 보증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①기술보증기금 본계정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자금공급이 목적인 반면,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은 R&D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이라는 특수목적사업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점, ②기술혁신사업화계정 중 IP유동화보증은 공공연구기관 보유 로열티채권을 기반으로 유동화하는 사업으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제공만 가능한 기술보증기금 본계정을 통해서도 운영할 수 없는 점, ③지원대상 평가 및 보증한도 등 자금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동일 계정내 운용 시 재원 혼용우려가 있어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별도 분리계정 설치가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별도 계정을 통한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표 8] 기술보증기금 본계정과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의 차이점

구분	기술보증기금 본계정	기술혁신사업화계정
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인 자금공급을 통한 국민경제 균형발전 도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개발·사업화)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발전 도모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자 (R&D 사업화 중소기업 등)	R&D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 등
자금 운영	자금산정: 기업단위 평가 보증한도: 기업+기술 평가	자금산정: 프로젝트(사업화) 단위 평가 보증한도: 본계정과 별도 한도 운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표 9] 기존 기술보증과 신규 기술혁신사업화보증 비교

구분	기존 R&D보증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신규 프로젝트방식 R&D보증(안) (개정안의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지원 대상	■ R&D 사업화 기업	■ R&D 성과 사업화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 기술 이전 후 사업화 기업
평가 방법	■ (모형) 모든 기업과 보증상품에 일괄 적용되는 표준평가모형 (KTRS)	■ (모형) 과제 중심의 R&D 사업화 전용 평가모형으로 사업화 가능성 평가
지원 한도	■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에서 기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 프로젝트당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이내(최대 100억원, 既보증금액 차감 없음)
자금 산정	■ 기업 전체 매출액 추정하여 소요전자금 산정	■ 사업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인건비, 재료비 등) 산정 ■ 투입된 개발비의 2배 이내(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에서 산정특례 제공
지원 자금	■ 양산자금 위주	■ 개발완성자금 + 양산자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용어 정의

개정안은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보증 등 금융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사업화보증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u>국공립 연구기관</u>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u>정부출연연구기관</u>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u>특정연구기관</u>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u>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u>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 기술의 실시료(기술료, 사용료, 그 밖의 기술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을 권리 라. 가목 내지 다목, 마목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마. 그 밖에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 “유동화”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

현행	개정안
<신설>	유동화를 말한다. 12. “유동화보증”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2조제6호의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정의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촉진 보증사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용어를 정의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정으로 보임.

[표 10] 공공연구기관 유사 입법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u>공공연구기관</u>”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u>공공연구기관</u>”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u>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u>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시행령」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u>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u>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표 11] 공공연구기관 현황

구 분	정부 출연연	특정 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기타 공공 연구기관	국공립 대학	사립대학	계
기관수 (개소)	24	11	16	50	49	27	120	297
대표 기관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기초과학 연구원	한국로봇 융합연구원	국립암센터 연구소	국방과학 연구소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조제7호의 “기술혁신사업자”는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자 중 ①중소기업, ②「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3)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③「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4)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

3)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는 자, ④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의 “기술혁신사업자”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기술혁신사업자”란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자 라.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기술혁신”⁵⁾을 기술의 개발 외에 성과물의 거래나 사업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현행법의 “사업화”⁶⁾ 정의를 활용하여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자”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개정안 제2조제7호다목에서 기술혁신사업자를 정의함에 있어 가목의 중소기업, 나목의 신기술사업자 외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자”를 추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미 기술혁신사업자로 중소기업 등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자의 경우 중소기업 등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규정한 취지는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프로젝트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증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젝트의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제 발전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⁷⁾을 고려할 때 기술혁신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현행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음.

안 제2조제8호의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은 기술 사업화 중소기업 등의 일반적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기술보증기금법」과 달리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사업화에 필요한” 채무로 한정하여 해당 보증이 사업화(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임을 명시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음.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12]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사 입법례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⁸⁾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u>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u>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시행령」 제4조(금전채무)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사채 2.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구상(求償)에 따라야 할 금전채무 3.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용역 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이란 기술혁신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u>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u>

안 제2조제9호의 “기술자산등”은 현행 법령상 “기술”의 개념이 기술 그 자체 또는 기술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를 지칭⁹⁾하고 있으나, 기술이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해 기술로부터 파생된 재산적 권리를 정의하고, 유동화증권 발행 등의 기초가 되는 유동화자산에 포함하기 위해 “기술자산등”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 외에는 적절한 규정으로 보임.

개정안의 “기술자산등”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u>기술자산등</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10)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 기술의 실시료(기술료, 사용료, <u>그 밖의</u> 기술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을 권리 라. <u>가목 내지 다목</u>, 마목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마. 그 밖에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 제2조제10호의 “회사채등”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회사채등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유동화증권 발행 등의 기초가 되는 유동화자산에 회사채등을 포함하기 위해 용어를 정의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정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3의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 13] 회사채등 유사 입법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금전채무 등) ③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는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절한 규정으로 보임.

[표 14] 유동화 유사 입법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유동화”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¹¹⁾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표 15] 유동화보증 유사 입법례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 <u>유동화회사보증</u> ”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u>유동화전문회사</u> (이하 “ <u>유동화회사</u> ”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 <u>유동화보증</u> ”이란 기금이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u>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u> (이하 “ <u>유동화회사등</u> ”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 <u>유동화보증</u> ”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u>유동화전문회사</u> (이하 “ <u>유동화회사</u> ”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다른 신탁업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3.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의 근거 마련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기술혁신사업화보증¹²⁾, ②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¹³⁾, ③기술혁신사업화보증과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④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보증 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지원, ⑤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의 수행을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5장 제목 개정 및 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u>활성화</u> 지원 등 <u><신 설></u>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 <u>화의 활성화</u> 지원 등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은 <u>기술혁신사</u> <u>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u> <u>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u> <u>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u>

12) 안 제2조(정의)

8.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이란 기술혁신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3) 안 제2조(정의)

11. “유동화”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12. “유동화보증”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u>을 추진할 수 있다.</u> <u>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u> <u>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u> <u>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u> <u>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u> <u>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u> <u>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u> <u>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u> <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u> <u>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u> <u>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u> <u>지원</u> <u>5. 그 밖에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u> <u>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u> <u>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u> <u>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u> <u>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u> <u>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u>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현행법 제5장(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은 제27조의2의 규정(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¹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거래 알선, 정보수집·분석 등 비금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장 제목에 “사업화의 활성화”를 추가하고, 같은 장에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을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화 촉진을 위해 현행 비금융사업 외에 기술혁신사업화보증·유동화보증·이자지원 등 금융사업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사업화 금융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R&D 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개정안은 기술혁신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중 하나로 중소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27조의3제1항제4호), 이는 기술혁신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기술혁신사업자의 대여자금에 대한 보증 외에 이자까지 지원하는 것이 다른 보증사업이나 이차보전 사업과 비교할 때 재정배분의 효율성, 도덕적 해이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인지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16] 보증사업에 이차보전을 병행 지원한 사례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2026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사업 ¹⁵⁾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에 대한 연 1% 이차보전 지원 - 10,500억원(총지원규모)×1%(이자보전율)÷12개월 × 11개월 = 9,625백만원	9,625
2025	밸류업 기업 이차보전사업 ¹⁶⁾	밸류업 기업이 IP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 IP보증에 의한 대출금액 8,400백만원×2.5%(보전이자율)	210
2025	중소기업 R&D융자(이자보전) 사업 ¹⁷⁾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 및 사업 수행을 위한 평가여비, 정산시스템 등 이차보전 관련 운영 지원 - 신규: 1,526억원 × 5.5%P × 6/12개월 = 4,200백만원 기지원: 1,492억원 × 5.5%P × 12/12개월 = 8,200백만원	12,400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¹⁸⁾	'24년도 R&D 수행 기업 중 계속과제 사업비 감액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사업화를 위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 - 기지원: 2,200억원(총지원규모) X 5.0%P X 12/12개월 = 11,000백만원	11,000
비고	'중소기업 R&D융자(이차보전)사업 ¹⁸⁾ ' 및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¹⁹⁾ '의 경우 R&D협약변경 기업이 해당 이차보전 사업 선정 확정 시 기술보증기금 '범부처 정부 R&D 저리융자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5년간 최대 5.5% 이차보전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및 2025년·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 예산 사업설명자료
참고

1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사업(1234-303)의 내내역사업

16) 일반회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2131-304)의 내내역사업

17)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사업(1253-301)의 내내역사업

18) 산업부 일반회계,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사업(3174-412)의 내내역사업

4.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에 “사업화” 개념 추가 등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과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설치하는 계정의 명칭을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에서 “기술혁신사업화계정”으로 변경하고(안 제27조의4제1항), 계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에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안 제2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금융회사등이 해당 계정에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7조의4제2항제3호 신설), 해당 계정에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안 제27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u>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u>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u> 을 설치하고 <u>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u>	제27조의4(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 <u>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과 사업화 금융지원을</u> ----- ----- <u>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u>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u>	② ----- ----- <u>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u> -----

현행	개정안
전부 또는 일부를 <u>계정</u>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공공기관</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u><신설></u> <u><신설></u> ③ 그 밖에 <u>계정</u>의 수입·지출 및 운용과 회계·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사업화계정</u>----- -----. 1. (현행과 같음) 2. ----- -----<u>공공기관</u> 3. <u>금융회사등</u> 4.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u> ③ <u>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u> ④ -----<u>사업화계정</u>----- ----- -----.

개정안은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통한 사업의 범위가 현행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사업 외에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재

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등이 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술보증기금법」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¹⁹⁾은 금융회사등의 출연금(의무출연), 정부의 출연금, 금융회사등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임의출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정안과 유사하게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 기금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별 규모는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사업비 1조 5,899억원 대비 금융기관출연금은 46.3%(7,357억원), 민간출연금은 4.5%(712억원), 정부출연금은 1.3%(200억원) 수준임.

19)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표 17] 기술보증기금 본계정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결산)	2025년(계획)	2026년(계획)
수입	○ 자체수입	1,591,908	1,465,431	1,603,965
	금융기관출연금	735,741	631,503	754,696
	이자수입	108,365	63,509	49,060
	구상채권회수	155,194	157,000	155,736
	보증료수입	346,864	352,752	357,198
	기술보증료	331,251	328,653	329,613
	유동화보증료	2,279	6,720	9,030
	성과보증료	258	99	63
	기술평가료	11,408	15,100	15,400
	수입수수료	1,242	1,854	2,734
	추가·연체보증료	426	326	358
	기타수입	245,744	260,667	287,275
	고정자산매각대	15,583	21,396	18,056
	고정자산매각익	61,750	19,610	36,168
	임차보증금회수	4,410	8,220	7,371
	공탁금회수	5,437	9,731	18,675
	대여금회수	1,362	704	879
	선급법인세환입	5,625	12,870	5,801
	팩토링매출채권회수	77,354	99,068	98,813
	정부출자수입	2,909	2,908	3,387
	민간출연금	71,154	85,550	97,521
	기타영업외잡수익	160	610	604
	○ 정부내부수입	222,059	46,595	260,255
	일반회계전입금	20,000	40,000	60,000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195,000	-	195,000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7,059	6,595	5,255
	○ 여유자금회수	1,834,631	1,796,000	1,988,366
합 계		3,648,598	3,308,026	3,852,586
지출	○ 사업비	1,589,929	1,617,321	1,877,267
	산업금융지원(기보)	1,579,117	1,597,401	1,844,569
	기술보증대위변제	1,329,686	1,330,200	1,527,500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11,044	-	26,610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74,255	75,263	50,259
	구상권관리	25,087	15,853	31,066
	기술평가	6,713	7,940	9,006
	기술·경영지도	2,606	3,636	3,778
	보증료환급	28,331	26,621	26,403
	업무용부동산취득	2,057	38,518	70,542
	팩토링금융	99,338	99,370	99,405
	기보IT운영	10,812	19,920	32,698
	기보IT운영(정보화)	10,812	19,920	32,698
	○ 기금운영비	214,063	226,532	238,895
	인건비	157,454	165,434	177,296
	기금관리비	56,609	61,098	61,599
	○ 정부내부지출	195,000	-	-
	공자기금예탁금	195,000	-	-
	○ 여유자금운용	1,649,606	1,464,173	1,736,4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의 금융기관등 출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상 민간출연금(임의출연)과 유사하게 금융회사등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출연받을 계획이라는 설명임.

[표 18] 기술보증기금 본계정 임의출연 사례

- ① 금융기관과의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
- (취지) 주력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우대사항) 보증비율: 100%(3년간), 보증료 감면 0.2%

(단위: 억원)

구분	협약기관	협약일	출연금액	지원규모	지원실적('25년)
주력산업 위기극복	5개 은행 ¹⁾	'25.03.14	315	6,292	5,968

주 1)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2) 2025.12.31. 기준

- ② 중소기업은행과의 글로벌 통상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
- (취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위기산업 및 기회산업 영위기업에 필요자금을 적시에 공급
 - (우대사항) 보증비율: 100%(3년간), 보증료 감면 0.2%

(단위: 억원)

구분	협약기관	협약일	출연금액	지원규모	지원실적('25년)
통상환경변화	기업은행	'25.05.26	100	2,000	1,513

주: 2025.12.31.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기술보증기금 본계정의 출연재원에서 임의출연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금융회사등이 기술혁신사업화 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기술혁신 사업화 보증 실시에 충분한 수준의 출연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출연 주체별 출연 예상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사업화계정의 손실발생 시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이와 같은 손실보전 관련 규정은 「기술보증기금법」의 손실보전 규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표 19] 손실보전 유사 입법례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제45조(결손보전)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27조의4(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③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다만, 「기술보증기금법」은 결손보전 관련 규정에서 기금 결산에서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전액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도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이익금이 생겼을 때 계정에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유동화보증의 세부 운영사항 규정

개정안은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중 유동화보증과 관련한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유동화보증의 지원대상, 운영방법, 인수최고한도를 규정하고(안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7조의5제4항 신설),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제5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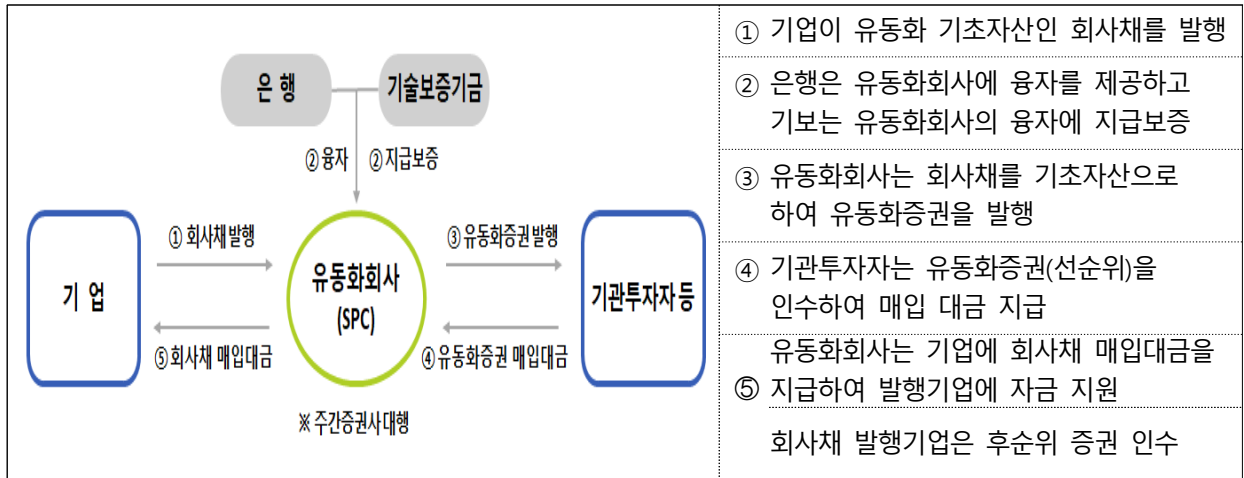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7조의5(유동화보증) ① 기술보증기금은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동화회사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u> <u>1. 유동화증권의 발행</u> <u>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u> <u>②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위탁자”라고 한다)는 기술자산등을 유동화하기 위하여</u>

현행	개정안
	<u>그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u> <u>1. 공공연구기관</u> <u>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u> <u>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주회사</u> <u>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u> <u>5. 기술혁신사업자</u> <u>③ 제1항의 유동화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 및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위탁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④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른 유동화보증은 기본적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과 유사한 구조이나, 공공연구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보유한 유망 기술자산도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동화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료 등 로열티채권을 기반으로 한 유동화보증(IP유동화보증)을 신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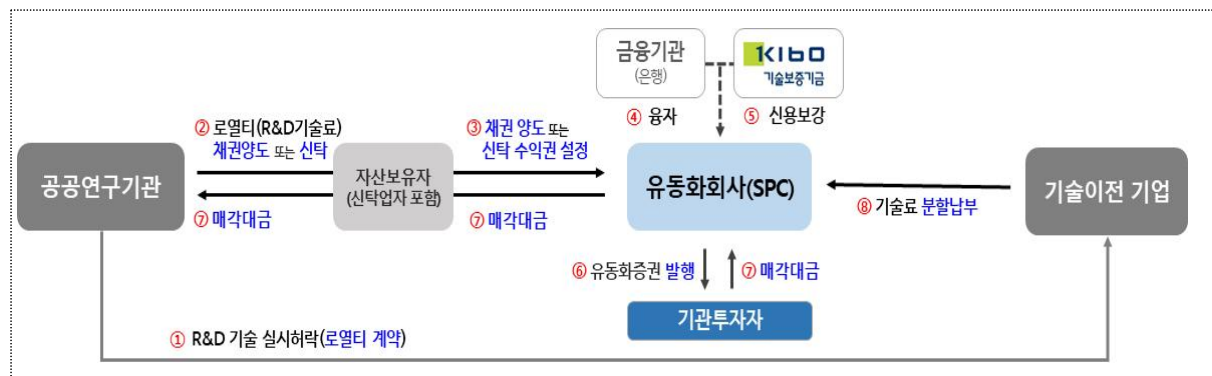
[표 20] 「기술보증기금법」상 유동화회사보증 지원방식 개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IP유동화보증은 공공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시 발생하는 로열티(기술료 등) 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으로, 보유기술을 이전하는 공공연구기관 등에는 로열티를 일시지급하고, 기술을 이전받는 중소기업은 해당 로열티를 유동화 대상기간 동안 분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보다 쉽게 이전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21] IP유동화보증 구조(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7조의5제1항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유동화자산으로 “기술자산등²⁰⁾ 또는 회사채등²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유동화자산으로 규정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관련 조문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일부 차이점이 있음.

[표 22] 「기술보증기금법」 및 개정안의 유동화보증 관련 조문

유동화회사보증 (「기술보증기금법」)	유동화보증 (개정안)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① 기금은 <u>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제27조의5(유동화보증) ① 기술보증기금은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유동화회사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

20)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자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다. 기술의 실시료(기술료, 사용료, 그 밖의 기술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을 권리
- 라. 가목 내지 다목, 마목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 마. 그 밖에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유동화회사보증 (「기술보증기금법」)	유동화보증 (개정안)
「시행령」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u>”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중소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권	<개정안 정의 규정> 9. “기술자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 기술의 실시료(기술료, 사용료, 그 밖의 기술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을 권리 라. 가목 내지 다목, 마목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마. 그 밖에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안 제27조의5제2항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 등이 기술자산등을 유동화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자산유동화와 달리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이 보유한 기술자산등도 유동화의 대상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음.

유동화회사보증 (「기술보증기금법」)	유동화보증 (개정안)
<유사 규정 없음>	제27조의5(유동화보증) ② <u>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위탁자”라고 한다)는 기술자산등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u>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²²⁾ 및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²³⁾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주회사²⁴⁾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²⁵⁾ 5. 기술혁신사업자
--	---

[표 23]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 개요(개정안 제2항제2호~제4호)

구분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근거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주무부처	교육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설립목적	대학 산학연 협력 지원 및 대학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대학 보유 기술의 투자 및 자회사 성장 지원	공공(연) 보유기술의 투자 및 출자기업 성장지원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투자 및 직접사업화

2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공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구분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	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대학 학칙에 따른 설립 근거 마련	설립주체가 전체지분 50% 초과보유(설립시 자본금 30% 초과 기술현물 출자)	설립주체가 전체지분의 50% 초과 보유	설립주체가 전체지분의 10% 이상 보유
도입시기	2003.05	2007.08.	2010.04.	2007.01.
조직형태	비영리법인(특수법인)	영리법인(주식회사)	영리법인(주식회사)	영리법인(주식회사)
설립주체	대학(단독)	대학 산학협력단(단독/공동)	공공연구기관(대학 산학협력단 제외)(단독/공동)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산학협력단) 등(단독/공동)
법인설립	설립등기	교육부 인가	산업부 등록	중기부 등록
설립현황	364개 법인(2023년 12월 기준)	84개사(2024년 12월 기준)	0개사(2024년 12월 기준)	8개사(2024년 9월 기준)
예시	00대학교 산학협력단	00대학교 기술지주회사	00연구원 기술지주회사	·ETRI홀딩스(주) ·한국과학기술지주(주) ·카이스트청년창업(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7조의5제3항 및 제4항은 「기술보증기금법」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유동화보증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 업무 수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보임.

[표 24] 「기술보증기금법」 및 개정안의 유동화보증 관련 조문

유동화회사보증 (「기술보증기금법」)	유동화보증 (개정안)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5(유동화보증) ③ 제1항의 유동화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 및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위탁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안 제27조의5제5항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²⁶⁾.

[표 25] 「신용보증기금법」 및 개정안의 유동화보증 관련 조문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제27조의5(유동화보증) ⑤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26) 참고로 「기술보증기금법」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시 유동화자산 양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및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에 따라 자산을 양수하여 구상권 행사 및 대물변제 채권의 매각 등의 수행이 가능하여 개정안의 조문이 없어도 채무양수가 가능하지만 「신용보증기금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임.

6. 수수료 및 보증료 수취 근거 마련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사업화 및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 업무 수행 시 수수료를 수취하고,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에 따른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 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기술보증기금은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u> <u>② 기술보증기금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① · ② (생략)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u>	<u><삭제></u>

현행	개정안
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사항은----- --.

현행법²⁷⁾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해 기술거래 알선 등의 사업을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규로 추가되는 기술혁신사업화보증 및 유동화보증 등의 경우에도 수수료와 보증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개정안은 수수료 및 보증료 징수의 주체를 기술보증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 및 보증료 수수의 대상이 되는 제27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실시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²⁸⁾, 징수주체를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

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③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467

개정안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V. 참고자료

1

기술보증기금 본계정 및 별도계정 개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본계정)** 기술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보증, 투자, 팩토링금융 등 설립목적에 따른 다양한 금융·비금융 사업을 수행 중

○ 기술보증기금계정(중기부)

- **(설립목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

*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 **(주요내용)**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을 지원

-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

- **(지원계획)** '26년 보증규모 29.5조원

□ **(별도계정)** 기술평가·보증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정 산업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한 별도 계정(총 5개) 위탁사업 수행 중

구 분 (시행시기)		금융(보증) 사업				공제사업	비금융 사업
		문화산업 보증계정(09년~)	신재생에너지 보증계정(21년~)	녹색전환보증계정			
				기후대응보증사업 ('22년~)	녹색기술산업 보증사업('25년~)		
사 업 명		문화산업보증	신재생에너지보증	탄소가치평가보증	택소노미평가보증	지식재산공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 ('22년~)
사업내용		문화콘텐츠 기업에 제작자금 보증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관련 설비 제조기업 대상 보증지원	탄소가치평가를 적용하여 탄소감축 성과기업(예상 포함)에 보증지원	녹색·환경기업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	공제가입자 모집 및 관리, 공제대출 (지식재산비용, 경영자금) 등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기반조성 구축과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컨설팅 및 자금지원
법 적 근 거	법률(약칭)	문화산업법	신재생에너지법	환경기술산업법		발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위탁근거	법 10조의2	고시 4조	법 제6조제3항		법 50조의5 (시행령 위임)	법 27조의2
	정부출연	법 10조의2 (시행령 위임)	법 11조 (고시 45조)	법 제6조제4항		법 50조의5	법 27조의3
	별도계정	법 10조의2	고시 45조	법 제6조제3항		시행령 28조의4	법 27조의3
회계 / 기금		일반회계	전력산업 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관리감독 주체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환경부	특허청	중기부

* '26년부터 신설되는 보증사업(IP유통화, 프로젝트 방식 R&D 등)과 함께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R&D사업화계정”으로 확대·개편

① 문화산업보증계정 (문체부)

- (주요내용)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유통사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계획) '26년 340억원* 신규공급

* 사업기관(기보, 신보, 무보) 전체의 신규공급액으로 기보 신규공급 금액은 미정

② 신재생에너지보증계정 (산업부, '24년 출연예산 미반영으로 신규공급 중단)

- (주요내용) 탄소가치평가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산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관련 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지원현황) '24년부터 신규 공급 중단 ('23년 971억원 신규 보증공급)

③ 녹색전환보증계정(기후대응보증) (환경부)

- (주요내용)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사업
- (지원대상) 탄소중립 선도기업
- (지원계획) '26년 5,500억원 신규공급

④ 녹색전환보증계정(녹색기술산업보증) (환경부)

- (주요내용) 녹색·환경기업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
- (지원대상)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녹색기술·환경산업 기업
- (지원계획) '26년 2,100억원 신규공급

⑤ 지식재산공제계정 (특허청)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부담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재무위험을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제공

부금	매월 적금 또는 일시 예금 형태로 부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 계약 해지시 일시 지급
대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시 적립부금의 5배 이내에서 ①지식재산비용대출 및 적립부금의 90% 이내에서 ②경영자금대출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계획) '26년 공제 6,300건* 유치 ※ 대출은 별도 목표 없음
- * '25년도 지식재산공제 사업계획 중장기 신규 가입 목표

⑥ 중소기업기술혁신계정 (중기부)

-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사업을 수행

기반 조성	공급-중개-수요 거래환경 전방위적 지원 인프라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니즈 적극 지원 *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 공급기술 DB 고도화,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기술거래 사업화 플랫폼 구축 운영 등
-------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대학·공공 연구기관,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
- (지원계획) '26년 보증사업 추가하여 “R&D사업화계정”으로 확대·개편 예정

2

프로젝트 방식 R&D보증(안)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개요)** 기존의 기업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R&D 프로젝트를 평가·소요자금 산정하여 기존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사업화 보증을 지원**

□ **(지원대상)** 정부 R&D 성공과제 사업화 추진기업 또는 공공연(출연연, 대학 등)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중점지원기업

- ① **민간투자기업** : 정부 R&D 성공기업 중 AC나 VC로부터 시장성을 인정 받아 5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한 기업(TIPS 등 투자연계형 R&D 수행기업 포함)
- ② **고액기술이전기업** : 사업화를 위해 거래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정부 R&D 성과(공공연기술 포함)를 이전받은 기업
- ③ **딥테크기업** : ABCDEF 전략산업 등 시장의 큰 파급력을 가지는 딥테크 분야의 정부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

□ **(지원내용)**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와 소요자금 산정으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사업화 자금지원**

- **(평가)** 과제단위 R&D 평가모형과 자가진단 기반 기술평가 오픈플랫폼(K-TOP)을 활용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선별**
- **(보증)**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산정하여 과제당 최대 30억원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100억원(해지 후 잔액이 30억원 이내일 경우)까지 지원**
- **(상환)** 성과연동 상환방식 도입하여, 성공시 추가지원 인센티브*로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실패시 **상환유예**로 기업 부담 완화

* 성공기업은 50% 이상 보증상환시 추가지원 가능하고, 실패기업은 전액 상환 후 가능

□ **(기대효과)** 기존 기업 보증 한도를 넘어 **혁신적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하고 정부 R&D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자금조달 기회 확대

3

R&D기술 유동화보증(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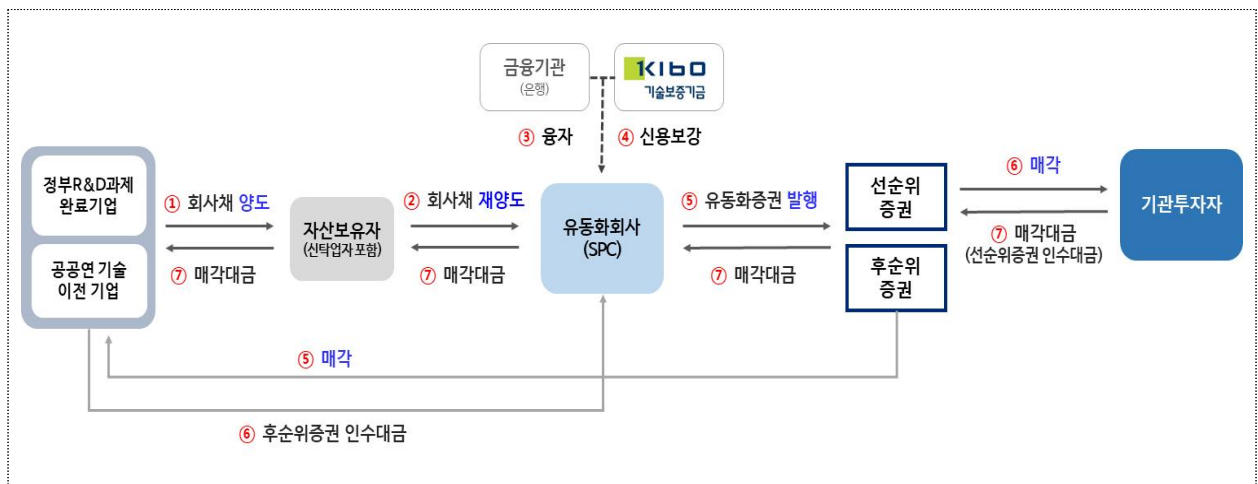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개요)** 공공연의 기술이전 대상 기술 및 R&D성공과제를 사업화하는 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업의 매출액에 기반한 기존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R&D 사업화 프로젝트의 사업화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회사채 발행한도에 반영

- **(지원대상)** 공공연(출연연, 대학 등)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정부 R&D 성공과제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R&D기술 유동화보증 개요(안) >



- **(지원내용)** 정부지원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여 매출시현이 예상되는 기업의 회사채를 유동화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

- **(지원한도)** 기술의 매출발생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기반으로 경제성평가를 실시, 산출된 기술사업화가치 금액 이내에서 지원

- **(기대효과)** 기술중심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에 기여

4

IP기술 유동화보증(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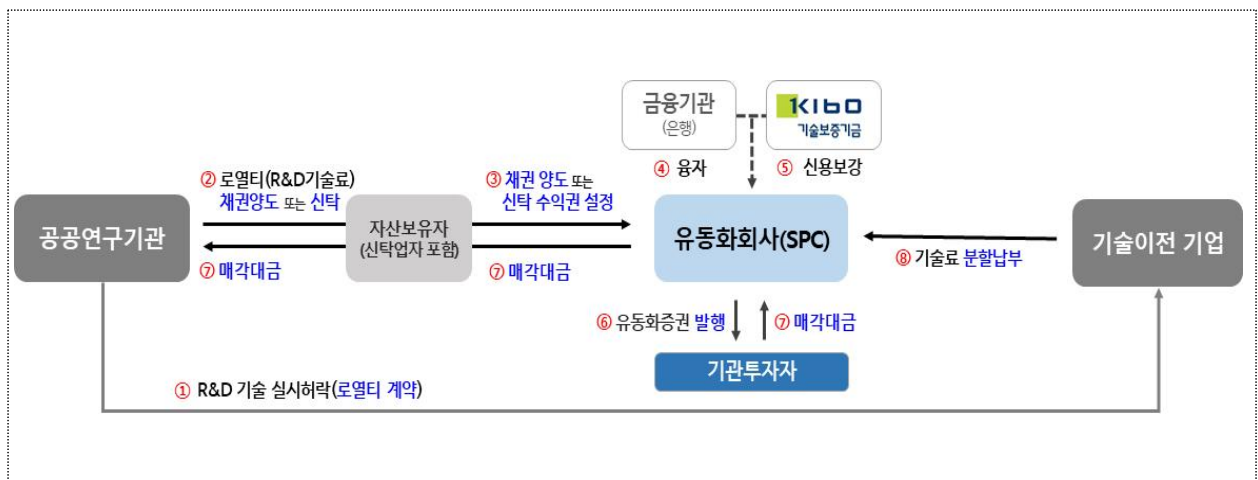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개요)** 기술거래시 발생하는 로열티(기술료)의 미래 현금흐름을 유동화*하여 공공연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으로 보다 쉽게 이전되도록 지원

* 로열티 채권의 유동화를 통해 공공연에는 기술료를 일시지급하고, 기업은 해당 로열티를 유동화기간 내 분할납부

- **(지원대상)** 로열티 계약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IP보유기관**(공공연 등), 공공연과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이용기업)

< 기술자산(IP) 유동화보증 지원방식 개요(안) >



- **(지원내용)** 로열티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로열티 수수료의 수취 및 수수료 지급 부담 경감을 위해 로열티 채권의 유동화 도입

① (공공연)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수취할 로열티채권(기술료)을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매각대금으로 일시에 수취

② (중소기업) 기술이전계약 체결시 일시에 납부할 정액기술료 혹은 선급금을 유동화 대상 기간(통상 3년)에 걸쳐 분납

- **(기대효과)** 공공연 로열티 일시납 니즈 충족, 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에 기여